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기회·임시회 때 개회식마다 국회의원 선서 실시〉
■박성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968호)

2025. 7.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 상 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성민 · 구자근 · 강선영 · 김대식 · 박준태 · 이현승
최보운 · 김위상 · 정동만 · 엄태영 · 김기현 의원(11인)

2. 제 안 일 : 2025. 4. 21.

3. 회 부 일 : 2025. 4. 22.

※ 의안번호 : 996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은 임기 초에 의원의 의무와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등의 내용으로 선서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관례적으로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단이 선출된 후 실시되는 개원식을 겸한 개회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원의 의무 및 의원으로서의 사명과 행동지표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선언적 규정 이상의 의미가 있음에도 임기 4년 중 단 1회만 실시하고 있어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정기회 및 임시회 집회시 제6조에 따른 매 개회식마다 국회의원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여 의원의 의무와 사명감을 고취하고 국회의원 선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24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정기회 및 임시회 집회시 매 개회식마다 국회의원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되, 의장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단서 신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4조(선서) -----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정기회 및 임시회 집회시 제6조에 따른 매 개회식마다 본회의 장에서----- . 다만, 의장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서를 생략할 수 있다. ----- ----- ----- -----.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임기 초에 국회의원으로서의 국익 우선의 의무와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등에 관하여 선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 국회의원 선서 (국회법 제24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행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는 임기 초에 이루어지는데,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단이 선출된 다음 실시되는 개원식을 겸한 개회식에서 선서하는 것이 관례임. 개원식을 겸한 개회식에서 모든 의원은 기립하여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든 후 의장의 선창에 따라 선서문을 낭독하는데, 선서문은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의원 각자가 보관하고 다른 1부는 국회사무처에서 보관함.

재선거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과 비례대표의석을 승계한 의원은 통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자 결정·승계 결정 이후 처음 출석한 본회의에서 선서하고 있음¹⁾.

이러한 선서는 의원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공표하는 하나의 의식으로서 의원으로서의 사명과 행동지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선언적 규정 이상의 정치적인 의미가 있음²⁾.

개정안은 국회법 제4조³⁾ 및 제5조⁴⁾에 따른 정기회 및 임시회 집회시 제6조에⁵⁾ 따른 매 개회식마다 국회의원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여 의원의

1)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7., p.116

2)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7., p.115

3) 「국회법」 제4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4) 「국회법」 제5조(임시회) ① 의장은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기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1.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한 경우

2.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 경우

③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5) 「국회법」 제6조(개회식) 국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실시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의무와 사명감을 고취하고 국회의원 선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다만,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서를 반복적으로 실시할 경우 선서의 의미가 퇴색되고 본회의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개정안 단서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법 문언상으로는 국회의원 선서가 재량사항이 되어 개정 취지와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점⁶⁾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문 의 처
02)6788-5014

6) 현행법은 국회의원 선서를 임기 초에 1회 실시하도록 하고 그 생략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함. 반면,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서를 정기회 및 임시회 집회 시 매 개회식마다 실시하도록 하되, 의장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선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를 규정하여 국회의원 선서가 재량사항의 성격을 가짐.